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9. 6. 11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. 5. 30. (이도희 의원 외 8인)

나. 상정의결

-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(2019.6.11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이도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정신건강검진기본계획 등(안 제4조)
- 검진기관의 신청 및 선정(안 제5조)
- 지원대상 및 검진비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-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(안 제8조)
- 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)
- 환수조치 등(안 제17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정신건강검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음의 병인 우울증,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.

- 일반적으로 정신과 치료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전에 정신건강검진을 통하여 더 큰 병으로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짐.

-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학업, 취업, 직장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치료의 대상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.

-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정신건강검진, 검진기관, 검진비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고

- 안 제4조(정신건강검진기본계획 등)에서는 정신건강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도 중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 보여짐.

- 안 제5조(검진기관의 신청 및 선정)에서는 검진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, 민원야기

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 또한 검진기관의 지정은 외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교부하려는 것으로 보임.

- 안 제6조(지원대상) 에서는 강남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특히 정신의료기관 진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- 안 제7조(검진비 지원)에서는 검진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진비의 금액,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.

- 안 제8조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에서는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는 절차와 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. 다만, 그 기간이 적절한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.

- 안 제9조(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에서는 지역협의체의 설치근거와 기능을 규정한 것임.

- 안 제10조(지역협의체의 구성)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사, 변호사,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바 최소한의 위원구성을 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로 인하여 위촉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
- 안 제11조(지역협의체의 운영)에서 제15조(위원의 해촉)까지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

- 안 제16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에서는 정신건강검진 사업은 장애인 보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나 장애인인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일부 실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.

- 안 제17조(환수조치)에서는 검진기관이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보임.

- 안 제18조(비밀누설의 금지)에서는 정신건강검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진기관 이용에 따른 개인의 비밀 누설과 공표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임.

- 안 제19조(수당)에서는 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제6조 지원대상 중 만18세 미만은 당연히 보호의무자나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문구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과 지정과 선정의 용어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?

○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및 전문위원, 그리고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조항의 문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함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122호

제안일자 : 2019.6.11.

제안자 : 행정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항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, 일부조항의 자구를 수정함.

2. 수정주요내용

- 조문의 내용 구체화(안 제2조제3호)
- 용어의 의미 명확화(안 제3조제2항)
- 조의 제목 및 자구 수정(안 제5조)
- 단서 조항 삭제(안 제6조)
- 조문 자구 수정(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호)
- 조문의 내용 구체화(안 제10조제3항)
- 조문 삭제로 인한 조항 번호 수정(안 제11조~제16조)
- 조항의 내용 구체화(안 제14조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 중 “진료에 대한 비용 일부” 를 “진료비” 로 하고, “것을 말한다” 을 “비용을 말한다” 으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 중 “선정하기” 를 “지정하기” 로 한다.

안 제4조 중 “시행” 을 “수립·시행.” 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 제목 “(검진기관의 신청 및 선정)” 을 “(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항” 을 “제1항” 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3항 중 “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의” 를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(이하 “지역협의체” 라 한다.)의” 로 하고, “선정” 을 “지정” 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4항 중 “선정기준” 을 “지정기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선정된” 을 “지정된” 으로 한다..

안 제6조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” 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 으로 한다.

안 제9조 중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(이하 “지역협의체” 라 한다)” 를 “지역협의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정신건강증진” 을 “정신건강검진” 으로 한다.

안 제10조제3항 중 “정신건강전문요원” 을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” 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"검진비"란 검진기관이 실시한 정신건강검진의 <u>진료에 대한 비용 일부</u>를 검진기관에 지원하는 <u>것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<u>선정</u>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참여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정신건강검진기본계획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4년마다 정신건강검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<u>시행</u>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 ② (생 략)</p> <p>제5조(<u>검진기관의 신청 및 선정</u>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<u>제2항</u>에 따라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 ③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<u>정신건강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원안과 같음)</p> <p>3. "검진비"란 검진기관이 실시한 정신건강검진의 <u>진료비를</u> 검진기관에 지원하는 <u>비용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원안과 같음) ② ----- <u>지정</u>하기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정신건강검진기본계획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수립</u>· <u>시행</u>-----.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 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<u>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</u>) ① (원안과 같음) ② ----- <u>제1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서울특별시</u></p>

검진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구청장은 선정된 검진기관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제6조(지원대상)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만 18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진비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9조(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

강남구 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(이하 "지역협의체"라 한다)-- 지정-----.

④ ----- 지정기준-----.

⑤ ----- 지정된 -----.

⑥ (원안과 같음)

제6조(지원대상) -----

----- <단서 삭제>

제8조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 ① ---
----- 별지 제3호서식-----
-----.

② (원안과 같음)

제9조(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

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(이하 " 지역협의체"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지역협의체의 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촉직 위원은 의사, 변호사,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----- 지역협의체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~ 3. (원안과 같음)

4. ----- 정신건강검진-----

제10조(지역협의체의 구성) ①·② (원안과 같음)

③ ----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-----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30.

발 의 자 : 이도희·이재민·이상애·
박다미·최남일·김광심·
안지연·김세준·이향숙
(이상9인)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정신건강검진기본계획 등(안 제4조)
- 다. 검진기관의 신청 및 선정(안 제5조)
- 라. 지원대상 및 검진비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(안 제8조)
- 바. 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)
- 사. 환수조치 등(안 제17조)
- 아. 비밀누설의 금지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기예산확보)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 대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신건강검진”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검진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검진기관”이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3조제5호에 따른 관내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3. “검진비”란 검진기관이 실시한 정신건강검진의 진료에 대한 비용 일부를 검진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참여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신건강검진기본계획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4년마다 정신건강검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정신건강검진 사업의 기본방향
2. 정신건강검진의 지원 내용 및 대상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

한다.

제5조(검진기관의 신청 및 선정) ① 정신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구청장은 선정된 검진기관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⑥ 정신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지원대상)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만 18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7조(검진비 지원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진비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민 여부, 검진내역 등을 확인하여 검진비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비를 지급할 수 있

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정신건강검진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지역 협의체(이하 “지역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정신건강검진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
2. 검진기관의 선정 및 취소
3. 검진비 지원범위
4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지역협의체의 구성) ①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의사, 변호사,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제11조(지역협의체의 운영)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지역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.

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며,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협의체의 직무

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회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
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4.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6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(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)를 모집·활용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검진활동 보조 등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환수조치 등)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
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8조(비밀누설의 금지)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9조(수당)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			
서울특별시 강남구 「정신건강검진 사업」 참여 신청서			
의료기관명		의료기관 개설번호	
소재지	전화	-	
	팩스	-	
	우편번호		
신청내용	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사업 참여		
개설자(대표자)		개설일	년 월 일
의사면허번호		전문의 자격번호	
본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「정신건강검진 사업」 참여를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신청인		(인)	

붙임 : 의료기관 신고증 사본 1부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『정신건강검진 사업』
검진기관 참여 지정서

의료기관명

의료기관 개설번호

소재지

지정내용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사업 참여기관

개설자(대표자)

면허번호

본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『정신건강검진 사업』
참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강 남 구 청 장

직인

검진비 청구서

청 구 기 관(입력 또는 명판으로 대체 가능)			
검진기관명			
요양기관기호			
대표자			
소재지			
전화번호			
지 급 계 좌			
은행명		예금주	
지급계좌번호			

청 구 내 역						
구분	총 방문횟수	1인당 검진료지원액(A) (단위 : 원)	대상자수(B) (단위 : 명)	청구 금액 (A×B) (단위 : 원)		
계(건강보험환자+의료급여수급자)						
건강 보험 환자	소계					
		1회차 방문				
		2회차 방문				
		3회차 방문				
의 료 급 여 수 급 자	2 종	소계(2종 수급자)				
			1회차 방문			
			2회차 방문			
			3회차 방문			
		1 종	소계(1종 수급자)			
			1회차 방문			
			2회차 방문			
		3회차 방문	-			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(말일)까지 실시한 검진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_____년 _____월 _____일
 대표자: _____ (서명)

강 남 구 청 장 귀하

